20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정산가이드

2022. 9

목 차

I. 신청 전 확인 사항 ····· 4
(1) 중복신청 불가 사업 ····· 4
(2) 지원 가능 여부/인증별 한도 여부 확인 ····· 4
(3) 중복 지원 불가 규정 확인 ····· 5
(4) 인정/한도 보는 방법 (예시) ····· 6

II. 신청 방법 ····· 8
(1) 신청 절차 개요 ····· 8
(2) 제출 서류 ····· 9
(3) 신청 절차 상세(수출바우처 포털 활용) ····· 12
(4) 신청시 유의사항 ····· 17
(5) 해외인증 서비스 비용지원 항목(예시) ····· 24
① NMPA(화장품) / ② 시스템인증 및 심사 주의사항 /
③ 갱신 인증 및 연회비 발생시 / ④ 인정한도 초과 시 증빙서류

III. 신청·정산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 ····· 26
(1) 자주 묻는 질문 ····· 26
(2) 유의사항 ····· 27
(3) 문의처 ····· 30

[붙임 1] 신청기업 제출서류 안내(2022년 해외규격인증 전용)
[붙임 2] 세부내역서(2022년 해외규격인증 전용)
[붙임 3] 공고규격(2022년 해외규격인증 전용)
[붙임 4] 인증분야별 한도(2022년 해외규격인증 전용)
[붙임 5] 서약서 양식 (2022년 해외규격인증 전용)
[붙임 6] (추가양식) NMPA (화장품)
[붙임 7] 제품시험기관 자격요건

20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정산 가이드

I.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전 확인사항

(1) 중복신청 불가 사업

구분	주무부처	운영기관	대상 사업 (세부사업)
수출 바우처 통합형	산업부	KOTRA	그린선도기업 육성 (22년 신설)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
		KOTRA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KOTRA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KOTRA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KOTRA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추가모집) *상반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신청 가능
	중기부	중진공	내수기업
		중진공	수출초보기업
		중진공	수출유망기업
		중진공	수출성장기업
		중진공	수출강소기업(22년 신설)
	경기도	KOTRA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창출기업 수출지원
	광주시	KOTRA	광주광역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충청북도	KOTRA	충북 수출상품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충북 해외 농식품 특화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2) 지원 가능 여부 및 인증별 한도 여부 확인

① 【붙임3】 22년도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88개) 및 신규 산업별 시스템인증 현황(14개), 22년도 해외규격인증 전용 한시적 지원 시스템 인증 현황(9개) 문서의 공고 규격을 참고하시고, 지원받으려는 인증이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② 【붙임3】 리스트에 없는 규격인증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③【붙임4】22년 수출바우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표 확인바랍니다.

④【붙임7】제품시험기관 자격요건 확인 바랍니다.

⑤ 참여기업이 인증획득비용을 선지출 후 해당 증빙을 가지고 사후정산 신청 (기존 개방형 방식)

바우처 정산은 <u>총괄수행기관, 회계법인의 검수확인을 거쳐 운영기관 정산승인 후 입금처리</u>

참여기업이 인증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바우처로 사후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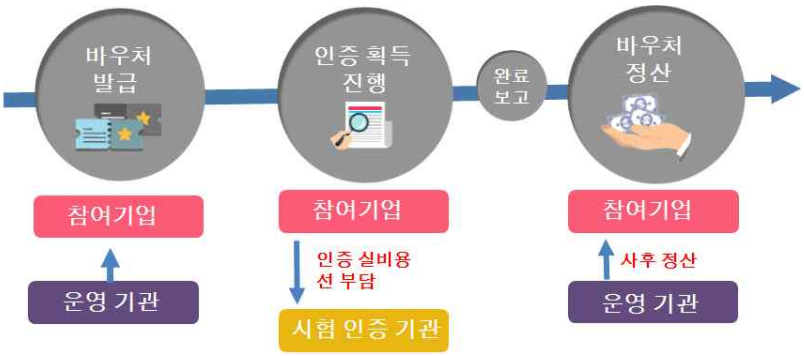

(3) 중복 지원 불가 규정 확인

- 타 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내에서 중복지원 불가함.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 사업 내에서도 지원 가능(동일품목, 동일 인증 아닌 경우)

(예시1) 동일 인증(FCC) 및 동일 품목(모델 ABC) 취득 ▶ 불가

- A사업으로 FCC(모델 ABC) 인증 취득 및 B사업으로 FCC(모델 ABC) 인증 취득 ▶ 불가

(예시2) 동일 인증(CE) 여러 품목(모델 ABC, 모델 DEF)인 경우, A사업, B 사업 신청 ▶ 가능

- A사업으로 CE(모델 ABC) 인증을 받고, B사업으로 CE(모델 DEF) 인증 취득 ▶ 가능

단, 모델 ABC, DEF는 기본모델인 경우에 한함(파생모델 제외)

(예시3) 동일 품목(모델 ABC) 다수 인증(CE, FCC) 취득 ▶ 가능

- 동일 품목(모델 ABC)에 대해 CE 및 FCC 인증 취득 ▶ 가능

(4) 인정/한도 보는 방법 (예시)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인증(심사)	시험	바우처 정산한도 (천원)	부분완료	참고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안전(Safety) 시험	○	○	3,500	-	
			전자파(EMC) 시험	○	○	3,000	-	
			무선(RF) 시험	○	○	8,000	-	소출력기기 1) BT 기기 : 4,000 천원 2) BT 및 WIFI 기기 : 8,000 천원
		기계 (MD)	기계 (MD)	○	○	12,000	한도의50%	1) 기계(완제품) EMI 포함 비용 2) 전기부품 별도 진행시 : CE 전기전자로 별도 진행
		의료기기 (MDD/MDR)	의료기기 class I (CE IVD 는 CE 기타로 분류)	○	○	15,000	-	*시험 및 심사만 발생시 신청할것
			의료기기 class II이상 (Class Is, Im, Ir => NB 심사 필요한경우 포함) *CE IVD 는 CE 기타로 분류	○	○	30,000	참고 적용	*시험, 심사 및 인증 만 발생시 신청할것 CE(MDD/MDR) 시험1) 안전시험 20,000 시험1) 전자파 10,000 시험1) 포장,운송,멸균 등 성적서 1,000 시험1) 기타 시험 (의료용품/안전성평가/ISO10993) 10,000 심사1) CE(MDD/MDR) + ISO13485(동시) IS 13485 + MDSAP (동시) 20,000 심사1) MDD/MDR 15,000 심사1) ISO13485 개별 : 시스템인증 인증1) 인증서
			CLASS II이상,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에 법정대리인 정보가 있는경우 만 신청할것)	2,500	-			

① CE 기계(MD 진행) 부분완료 시 : 바우처 정산한도 12,000천원의 **50%인 6,000천원이 정산한도**

② CE 전기전자(LVD, EMC, RF(BT 기기)) 인증완료 시

구분	세부분류	인증 (심사)	시험	바우처 정산한도	참고
전기전자 모델명: AAA	안전(LVD)	-	O	3500	
	전자파(EMC)	-	O	3000	
	무선(RF)	O	O	8000	
합계				14,500	정산한도

③ CE 의료기기 (Class II) 부분완료 시

구분	세부분류	인증 (심사)	시험	바우처 정산한도	참고
의료기기 모델명: ABC (60601-3판 이상)	안전	-	O	20,000	
	전자파	-	O	10,000	
	심사	O	-	15,000	
합계				45,000	정산한도

20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정산 가이드

Ⅱ.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개요

Ⓐ 지원요건 확인		Ⓑ 사업신청		Ⓒ 선정, 협약 체결 및 바우처발급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공고규격 여부, 인증별 한도, 지원 항목, 필수 제출서류 확인 (붙임 서류 참조)	⇒	**바우처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에서** 사업신청서(온라인 작성), 세부내역서(엑셀), 필수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운영기관(KOTRA) 선정발표, *운영기관이 협약 송부 *참여기업이 협약내용 확인후 서명 회신, *운영기관 서명으로 협약체결 완료 후 바우처발급**
공고규격, 인증별 한도, 제품시험기관 자격요건 확인		**참여기업이 온라인 작성 및 제출**		**협약체결 완료시 바우처 발급**

Ⓓ 해외규격인증 정산요청		Ⓔ 검수 확인		Ⓕ 수출바우처 정산
• **바우처 홈페이지 제출자료 업로드** 요구 증빙서류 제출	⇒	***중복 신청여부 1차 검토 *KTL이 사이트에서 보완요청 시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보완서류 재 업로드 *검수 완료 승인**	⇒	***중복 신청여부 2차검토 *바우처 정산확인 / 입금**
사후정산 : 참여기업이 온라인 제출		**KTL, 회계법인이 신청서류 검수**		**운영기관이 최종(정산)확인 및 입금**

< 참고사항 : 수출바우처 포털 상 사업 신청 및 참여기업 선정 후 정산신청 위치 >

Ⓑ 사업 신청	Ⓓ 선정 후 정산신청(사후정산 신청)

(2) 제출서류 (인증 건당 기준으로 작성) : 온라인으로 작성 + 파일 업로드

① (신청 관련) 필수 제출서류

(가) **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나) **세부내역서 [양식 : 공고문 붙임문서 2]** (다)(라)(마)(바)(사)(아)(자)

- 수출바우처 사이트(www.exportvoucher.com)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다) **서약서**

(라)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마) **사업자등록증**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아) 정산받을 법인 계좌 통장 사본

(자)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② (인증 결과물 관련) 필수 제출 증빙서류

- 인증 완료, 갱신, 부분완료에 따른 결과물을 전산 업로드
- 전산 업로드 파일명 양식에 맞춰 파란색 부분에 인증명, 기업명, 모델명을 수정하여 업로드

구분	세부 증빙서류	전산 업로드 파일명 양식
인증완료	인증서 사본 1부	인증서(인증명, 기업명, 모델명)
	시험성적서 사본 1부	성적서 (000시험, 기업명, 모델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세부내역서 상 ② 시험비 내용에 작성된 시험명으로 파일명을 구분 바랍니다. (예) 1.성적서(안전) / 2.성적서(전자파) / 3. 성적서(ROHS)
	참여기업의 적합성 선언문 사본 1부 (Doc의 경우 서명 후 제출)	-
	심사결과보고서 사본 1부 (해당시)	심사보고서(인증명, 기업명, 모델명)
인증갱신	신규 인증서 사본 1부	인증서(인증명, 기업명, 모델명)
	만료된 인증서 사본 1부	기존 인증서(인증명, 기업명, 모델명)
	시험성적서 및 심사보고서 (해당시)	
연회비	기존 인증서 사본 1부	기존 인증서(인증명, 기업명, 모델명)
	기타 인증유지 증빙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및 심사보고서 (해당시)	
부분완료	시험성적서 또는 심사보고서	

< 부분완료란 >
- '22년 2월 1일 이후 신청시점까지 성실히 인증진행을 했으나 결과보고 시 인증 Scheme에서 요구되는 CoC 및 DoC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적합으로 판정된 성적서, 심사보고서 까지 제출하면 부분완료로 인정

예) 전기제품 CE의 경우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서, RoHS 등 1개 이상 완료된 경우
예) 의료기기 CE MDD의 경우 CoC 인정범위는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서, 심사보고서 등 1개 이상 완료 된 경우

③ (인증 비용 관련) 필수 제출 증빙서류

- 시험·인증기관 또는 인증 대행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시험비·심사비용 증빙서류, 책임회사(법정대리인) 비용 증빙서류를 전산 업로드
- 전산 업로드 파일명 양식에 맞춰 파란색 부분에 비용항목, 인증명, 기업명, 모델명을 기입하여 업로드.

* 비용항목은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기입

구분	세부 증빙서류	전산 업로드 파일명 양식	제출 참고사항
인증비/시험비/심사비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사본 1부	인보이스(비용항목, 인증명, 기업명, 모델명)	· 서류 내 참여기업명, 인증명, 시험항목, 제품명, 모델명 등 표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세금계산서(비용항목, 인증명, 기업명, 모델명)	· 국내 기관일 경우, 세금계산서 필수 · 다수의 비용항목이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기로 항목별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
	송금영수증 (외환송금증 포함) 사본 1부	송금영수증(비용항목, 인증명, 기업명, 모델명)	· 보내는분, 받는분의 예금주 및 계좌번호 표시 · 외환송금증에 환율 기재되지 않은 경우, 송금일의 하나은행 최초 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캡쳐해 업로드
책임회사(법정대리인) 비용	책임회사 이용 증빙서류 1부	000책임회사 발췌 증빙	· 책임회사가 표기된 인증서, 성적서, 인증기관 접수증, 책임회사비용 계약서 · 인증서 또는 성적서 또는 심사보고서에 책임회사 정보 페이지 별도 발췌 증빙
	Invoice,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중 1부	책임회사 계약서 (인보이스 등)	· 참여기업명, 인증명, 시험항목, 제품명, 모델명 등 표시
	송금확인증 (외환송금증 포함) 사본 1부	책임회사 송금영수증	· 보내는분, 받는분의 예금주 및 계좌번호 표시 · 외환송금증에 환율 기재되지 않은 경우, 송금일의 하나은행 최초 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캡쳐해 업로드

< **외환송금증**에 환율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하나은행 **최초고시환율 매매기준율** 적용
- **기준일**은 국내에서 해외 **송금일자** 기준

현재환율

기준일 : 2020년04월16일 | 고시회차 : 1회차 | 고시시간 : 08시23분07초 | 조회시각 : 2021년01월18일 11시02분05초

통화	현찰				송금		T/C 사실때	외화 수표 파실때	매매 기준율	환가 료율	미화 환산율
	사실 때		파실 때		보낼 때	받을 때					
	환율	Spread	환율	Spread							
미국 USD	1,237.99	1.75	1,195.41	1.75	1,228.60	1,204.80	1,231.30	1,203.93	1,216.70	2.60075	1.0000

(3) 신청 절차 상세 (수출바우처 포털 활용)

① 수출바우처 포털 접속,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회원가입)

- 수출바우처 포털 접속 후,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 수출바우처 포털 주소: www.exportvoucher.com

- 사업 신청 위해선 기업회원 아이디 필수로 기존 아이디 없을 경우, 회원가입 진행

② '(해외규격인증 전용)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추가 모집공고' 신청

- '(해외규격인증 전용)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추가 모집공고' 선택

  * '(산업부) 2022년 하반기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①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②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2가지 지원산업 분야 중 택 1 필수

③ 신청서 작성 - 기업정보 기입

- 기업 기본정보, 계좌정보 등 기업 회원가입 시 입력정보 자동 적용
- '* 표시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미입력 시 신청 불가, 지사정보 및 해외조직망 현황 등은 해당 사항 없을 경우 미기입 가능

④ 신청서 작성 - 신청 세부내용 기입

- 「중견 혹은 중소기업확인서」 기반, 지원산업별(소재·부품·장비,소비재) 기업 구분 중 택 1
- 신청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세부내역서」의 수행내용(비용) - 정산신청 가능금액 기재

* 정산신청 가능금액 기반 검토 후, 실 바우처 발급액 산정

- 인증별 총 신청 건수와 신청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세부내역서」 첨부파일 개수 일치 필요

⑤ 신청서 작성 - 신청 서류 첨부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세부내역서)

- 양식 다운로드, 품목(모델)별/인증별 각 1건씩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 「NMPA 추가서류」의 경우, 중국 NMPA 화장품 인증을 진행한 경우에만 함께 제출

* 스캔본 및 PDF 파일 제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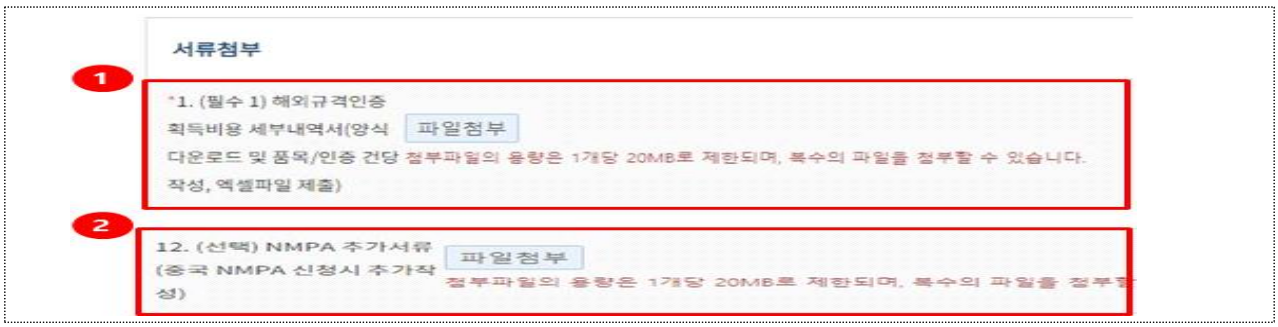

⑥ 신청서 작성 - 신청 서류 첨부 (인증결과물 및 인증비용 증빙서류)

- 위 (1) 제출서류 9-10 페이지 참조, 필요서류 모두 제출

⑦ 신청서 작성 - 신청 서류 첨부 (해외규격인증 서약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양식 다운로드하여 직인날인 및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⑧ 신청서 작성 - 신청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회사소개서 및 카탈로그)

- 별도의 양식 없이, 필수서류 구비하여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의 경우, 정산금액을 입금받을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제출

⑨ 신청서 작성 - 신청 서류 첨부 (중견 혹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⑩ 신청서 작성 - 신청 서류 첨부 (참고자료)

- 「해외규격인증 공고규격(2022년)」, 「제품인증분야 한도기준표(2022년)」: 지원 대상 인증 및 인증별한도 확인 가능 참고자료
- 「제출서류 목록」: 총 제출서류 상세 설명자료
- 「소부장표」: 해당 소재·부품·장비 산업 범위 확인 가능 참고자료

⑪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 팝업창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확인] 버튼 클릭
- 팝업창에 범용인증서 혹은 용도제한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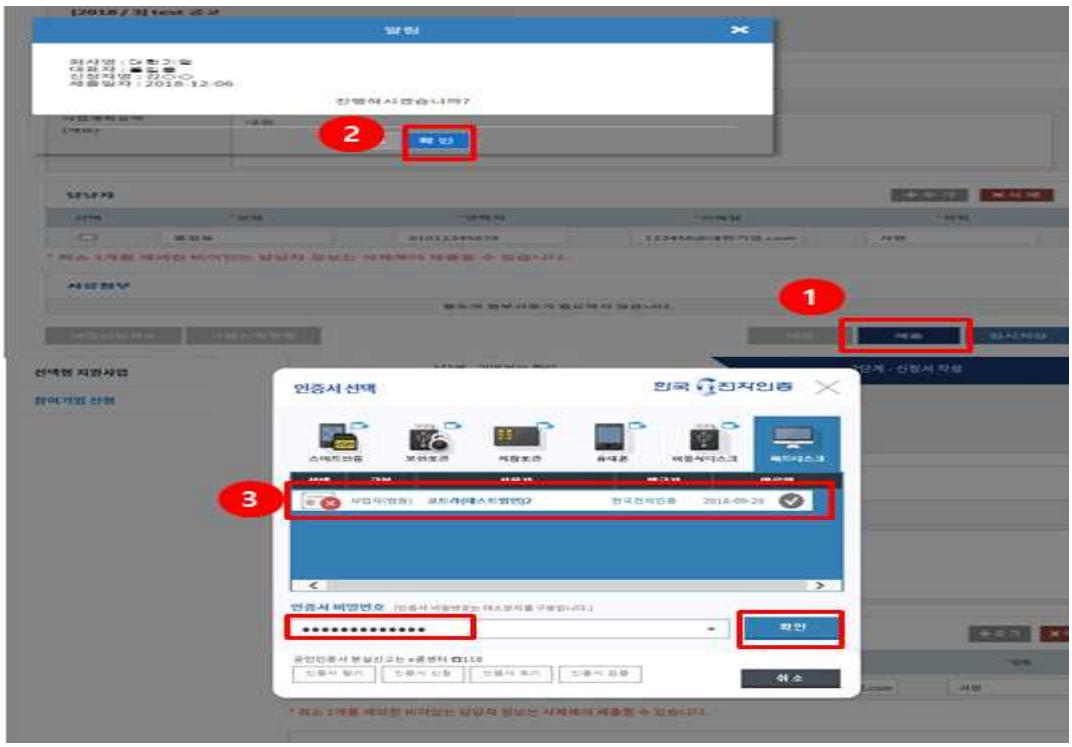

⑫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서 수정

- [참여기업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및 선정 현황] 에서 신청 사업 확인 가능
- 신청 기간 내 [수정/신청취소] 버튼 클릭 시, 신청서 수정 가능

(4) 신청 시 주의사항

* 해외규격인증 신청서(엑셀) 및 수출바우처 사이트 상세내역 작성 시

• **2022.9.14. 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인증에 대해서는 2022.9.14. 이전에 지출한 인증획득비용만 지원 가능**
• **위의 제출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로 인증별로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시 별도 보완 요청 및 사전 공지없이 미선정 처리 될 수 있음**
• **신청서는 인증 건당 1개씩 작성함** 예) 인증서 발급기준 1건 작성 CE 인 경우 품목당 적합선업문 1건 기준임. 시험성적서 기준 아님
• 결과보고서의 모든 비용 기재는 **천원단위 미만 절사(주의: 백원단위 이하 버림!)** • 참여기업 바우처 잔액이 인증획득 총 실비용보다 적을 경우 바우처 잔액 한도까지 청구금액 기재 요 엑셀파일에 바우처 한도를 고려한 정산요청금액과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을 각각 입력!
• 참여기업, 시험기관, 인증기관 상호 거래내역 발생 시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시험·인증기관에서 일부 시험 등을 타 시험·인증기관에 재의뢰한 경우 : 참여기업 → 시험·인증기관 → 국내외 타 시험·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이 되므로 각 과정의 인보이스, 송금증, 세금계산서(국내기관인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함
• 법정대리인(현지책임회사) : 인증절차상 법정대리인 이용이 **필수**인 인증 ※ 법령 또는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고 인증서, 성적서 등에 법정대리인의 정보(회사명(이름), 주소, 연락처 등)가 확인되는 경우
•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 1건의 제품 인증 진행기준(기본모델) ※ 기본모델 1개, 파생모델 다수인 경우 성적서 또는 인증서에는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1개의 성적서 및 인증서가 발행됨
• 타 기관에 위탁한 경우 (참여기업이 의뢰한 시험·인증기관에서 일부 시험, 심사 등을 타 시험·인증기관에 위탁처리한 경우) - 비용 인정에 필요한 서류 : 제출된 시험성적서와 심사보고서를 실제로 발급한 타 시험·인증기관의 인보이스(청구서) 및 송금증 필수 제출
• NMPA (화장품) 진행하는 경우 : 인증서 1건 기준, 다수품목 요청 X - 효능시험 진행시 개별성적서 필요 : (추가양식) NMPA 작성 할 것 → ① 참조
• 시스템인증 및 사후심사 등 심사 진행시 주의 사항 → ④ 참조
• 갱신 인증 및 연회비 발생시 정산 (Greenguard, Oeko-tex, Bluesign, UL 등) → ⑤ 참조

① NMPA(화장품) 진행하는 경우 (인증 건별 신청, 다수품목으로 신청시 정산 거절)

(가) 세부내역서 작성

(나) "(추가양식) NMPA(화장품)" 엑셀파일 작성

- 위 (가) 에 대해서 해당 하는 Case 에 대해 추가양식에 작성

(예시1) (Case 1) 신규인증 : 기초검측 및 안정성평가만 진행시

(Case 1) 신규인증 : 기초검측 및 안정성평가만 진행시

KTL
(사후정산 / 개별형) 접합의 경우
정산표에 기입하지 않음

[외화로 진행한 경우]

수출바우처 구매번호 / 사후정산번호	구분	품목정보		인증정보					외환정보 (CNY 등) (1)		환율정보 (2)		원화금액 (3)=(1)+(2)	현설정비 (수행기관) (4)	정산요청금액 (5)=(3)+(4)	정산한도 (참고)
		품목세부	모델명	인증명	시험명	(시험)성적서 번호	법정대리인명 (현지책임회사명)	(신규)인증번호	시험비 ①	법정대리 비용 ②	환율 (CNY)	날짜	합계(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규	000선크림	LC123	NMPA	기초검측	1234		AN 50459987 0001	9,000	-	190	22.04.05	1,710	해당 없음	3,230	*신규인증 진행시 적용 : 3,600천원 한도 - 시험 1) 기초검측시험비용 : 2000천원 한도 2) 안전성평가보고서 : 800천원 한도 (검측성적서 제출必) - 법정대리인 : 800천원 한도
				NMPA (추가)	안전성평가				4,000	-	190	22.04.05	760			
				법정대리	-	-	ABCEEF			4,000	190	22.04.05	760			
합계 (Case 1)													3,230	해당없음	3,230	5,030

(예시2) (Case 2) 신규인증 : Case 1 + 효능시험 추가시

(Case 2) 신규인증 : Case 1 + 효능시험 추가시

KTL
(사후정산 / 개별형) 접합의 경우
정산표에 기입하지 않음

[외화로 진행한 경우]

수출바우처 구매번호 / 사후정산번호	구분	품목정보		인증정보					외환정보 (CNY 등) (1)		환율정보 (2)		원화금액 (3)=(1)+(2)	현설정비 (수행기관) (4)	정산요청금액 (5)=(3)+(4)	정산가능금액
		품목세부	모델명	인증명	시험명	(시험)성적서 번호	법정대리인명 (현지책임회사명)	(신규)인증번호	시험비 ①	법정대리 비용 ②	환율 (CNY)	날짜	합계(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규	000선크림	LC1234	NMPA	기초검측	1234		AN 50459987 0001	9,000	-	190	22.04.05	1,710	해당 없음	3,230	*신규인증 진행시 적용 : 3,600천원 한도 - 시험 1) 기초검측시험비용 : 2000천원 한도 2) 안전성평가보고서 : 800천원 한도 (검측성적서 제출必) - 법정대리인 : 800천원 한도
				NMPA (추가)	안전성평가				4,000		190	22.04.05	760			
				법정대리			ABCEEF			4,000	190	22.04.05	760			
				(A) 소계(CASE 1)					13,000	4,000			3,230	해당없음	3,230	
				NMPA (추가)	효능(보습)				9,000		190	22.04.05	1,710	해당 없음	20,710	* 효능추가 : 15,000천원한도
				NMPA (추가)	효능(진정)				30,000		190	22.04.05	5,700			
				NMPA (추가)	효능(영양)				35,000		190	22.04.05	6,650			
				NMPA (추가)	주름개선				35,000		190	22.04.05	6,650			
				(B) 소계(효능추가)					109,000				20,710	해당없음		
합계 (A+B)													23,940	해당없음	23,940	20,030

(예시3) (Case 3) 갱신 : 안정성평가만 진행시

(Case 3) 갱신 : 안정성평가만 진행시

KBI: (개별형) 접합의 경우 전설형이 기회하기 발전

[외화로 진행한 경우]

수출바우처 구매번호 / 사후정산번호	구분	품목정보		인증정보					외환정보 (CNY 등) (1)		환율정보 (2)		원화금액 (3)=(1)+(2)	전설형비 (수행기관) (4)	정산요청금액 (5)=(3)+(4)	정산가능금액
		품목세부	모델명	인증명	시험명	(시험)성적서 번호	법정대리인명 (현지책임회사명)	(기존)인증번호	시험비 ①	법정대리 비용 ②	환율 (CNY)	날짜	합계(천원)	(천원)	(천원)	(천원)
	갱신	000선크림	LC12345	NMPA (추가)	안전성평가				4,000		190	22.04.05	760	해당없음	760	안전성평가보고서 : 800천원 한도 *기존 인증서 및 성적서 제출 ※
합계 (Case 3)													760	해당없음	760	760

(예시4) (Case 4) 갱신 : Case 3 + 효능시험 추가시

(Case 4) 갱신 : Case 3 + 효능시험 추가시

KBI: (개별형) 접합의 경우 전설형이 기회하기 발전

[외화로 진행한 경우]

수출바우처 구매번호 / 사후정산번호	구분	품목정보		인증정보					외환정보 (CNY 등) (1)		환율정보 (2)		원화금액 (3)=(1)+(2)	전설형비 (수행기관) (4)	정산요청금액 (5)=(3)+(4)	정산가능금액
		품목세부	모델명	인증명	시험명	(시험)성적서 번호	법정대리인명 (현지책임회사명)	(기존)인증번호	시험비 ①	법정대리 비용 ②	환율 (CNY)	날짜	합계(천원)	(천원)	(천원)	(천원)
	갱신	000선크림	LC12345	NMPA (추가)	안전성평가				4,000		190	22.04.05	760	해당없음	760	* 안전성평가보고서 : 800천원 한도 *기존 인증서 및 성적서 제출 ※
				(A) 소계(Case 3)					4,000				760	해당없음	760	
				NMPA (추가)	효능(보습)				9,000		190	22.04.05	1,710	해당없음	20,710	* 효능추가 : 15,000천원한도 *기존 인증서 및 성적서 제출 ※
				NMPA (추가)	효능(진정)				30,000		190	22.04.05	5,700			
				NMPA (추가)	효능(영양)				35,000		190	22.04.05	6,650			
				NMPA (추가)	주름개선				35,000		190	22.04.05	6,650			
				(B) 소계(효능추가)					109,000				20,710	해당없음		
합계 (A+B)													21,470	해당없음	21,470	15,760

② 시스템인증 및 사후심사 등 심사 진행시 주의 사항

<시스템인증 및 사후심사 등 심사 진행시 주의 사항>

- **(시스템인증 및 심사)** 수출바우처 지원 인증 중 시스템 인증 및 심사보고서가 필요한 인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1) 견적서 진행시 심사비용에 심사소요 Mday 및 심사인원에 대한 정보 필수

ex) 심사 견적서 샘플

Service:	VAT %	Net Total:
Pre-audit FSSC 22000 V5.0 Pre-Audit - Audit Date : 2020.8.27 - Audit MD : 1Manday (1MD = 1,100,000 KRW)	10.00	1,100,000
Stage 1 (on-site) FSSC 22000 V5.0 Initial Audit (Stage 1) - Audit Date : 2020.8.29 - Audit MD : 1Manday (1MD = 1,100,000 KRW)	10.00	1,100,000
Stage 2 FSSC 22000 V5.0 Main Audit (Stage 2) - Audit Date : 2020.9.4 - Audit MD : 2Mandays (1MD = 1,100,000 KRW)	10.00	2,200,000
Application Fee	10.00	500,000
Expenses Travel Expenses for Jae-Hyun Lee & Yong-Gil Lee	10.00	360,000
Preparation&Reporting	10.00	550,000
Due Date: 22/10/20	Net Amount:	5,810,000
Payment Conditions: Net 30 Days	VAT Amount:	581,000

(2) 심사보고서에는 심사일, 심사원 이름 및 서명 정보 등 필수

(3) 심사원 명함

③ 갱신 인증 및 연회비 발생시 정산 (Greenguard, Oeko-tex, Bluesign, UL 등)

㈎ 갱신 기간 확인 가능한 신규 발급된 (갱신) 인증서를 첨부

: 결과물 (갱신 인증서, 성적서 등) 발급일자가 수출바우처 사업기간 내 있는 경우 인정됨

(예시)

<인증서>	<성적서>

㈏ 수출바우처 정산 요청시 (전산 화면)

품목세부(신청품목) 란에 갱신/연회비 여부 작성

(예시) 품목(YY년 갱신), 품목 (YY년 Q1,Q2 갱신 심사), 품목(YY년 연회비)

• 1. 수행내용

• 총괄내용입력

구분	인증 완료	인증명칭	HALAL
인증명칭(공고인증 외)	기타인증(비공고인증) 선택	수출국가(지역)	미국, 유럽, 아시아 외
품목분야	식품	품목세부(신청품목)	식품(22년 갱신)
모델명	Guarana Seed Extract	정산요청금액*	5,500,000 원
		인증획득소요비용	5,500,000 천원(자동계산)

(1) 인증서 번호란에는 갱신된 인증서 번호 기입 / 만약 인증서 번호가 갱신되지 않는다면 기존 인증서 번호 기입
(2) 좌측 신규 인증서 발급일자와 이전 인증서 발급 일자를 확인 후 선택
(2) 갱신 시 시험이나 심사 진행 된다면 해당 정보 기입 후 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등 결과물 추가 업로드

(1) 진행특이사항 : 추가 모델 등 갱신 관련 상세 내용 기재
※ 타 지원 사업에서 최초인증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진행특이사항란에 기재 바랍니다.
예시) KTR 17년도 사업 구매번호 B20170909 최초 인증 취득
(2) 세부내역서 엑셀 파일 동일 내용 기재
(3) 인증 결과물 및 인보이스는 갱신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

④ 22년 인증별 한도금액 초과 시 등 증빙서류 설명

구분	정산요청금액	비용증빙서류(기준)	가능여부
1) 인증획득 비용이 인증한도를 ***초과*** (공급가 기준) 예) 인증획득비용 600 만원 〉 인증 한도 500 만원	500 만원	•Invoice(600만원) •세금계산서(600만원+VAT) •송금증(600만원+VAT)	가능
		•Invoice(500만원) •세금계산서(500만원+VAT) •송금증(500만원+VAT)	가능
	<참고> - 인증획득 비용이 한도 초과 시 정산은 한도 금액 기준으로 처리됨		
2) 인증획득 비용이 인증한도와 ***동일*** (공급가 기준) 예) 인증획득 비용 500 만원 =인증 한도 500 만원	500 만원	•Invoice(500만원) •세금계산서(500만원+VAT) •송금증(500만원+VAT)	가능
3) 인증획득 비용이 인증한도 ***미만*** (공급가 기준) 예) 인증획득요비용 400 만원 〈 인증 한도 500 만원	400 만원	•Invoice(400만원) •세금계산서(400만원+VAT) •송금증(400만원+VAT)	가능

(5) 해외인증 서비스 비용지원 항목 (예시)

2022년 해외인증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항목	한도 금액	지원비율	서비스 결과물	
			인증 완료	부분 완료
① 시험비	※ 22년 수출바우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	수출바우처 사업별 한도 기준 (인증 수 제한없음)	성적서 (적합)	성적서 (적합)
② 심사비			심사 보고서 (적합)	심사 보고서 (적합)
③ 인증비			인증서 (신규,갱신)	X
⑤ 기술문서	의료기기 II 이상 (60601-1 3판) ※ 22년 수출바우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		X	X
⑥ 법정대리인 (현지책임 회사)	각 인증별 별도 한도 지정 ※ 22년 수출바우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		증빙시	△

△ : 부분완료 경우, 적합성적서에 법정대리인(현지책임회사 명기된 경우 현지책임회사비 일부 지원가능
X : 지원 불가 항목

① **시험비** : 인증기관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으로 제품을 시험(TEST)비용
②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후 발급된 심사비용
③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신청비, 연회비 등)
④ **법정대리인(현지책임회사비)** : 신규인증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20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정산 가이드

Ⅲ. 신청 · 정산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rea Testing Laboratory

1 신청 및 정산 시 자주하는 질문

Q1. 신청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신청 회수에 제한 없습니다.(9월 13일에 신청 후, 미선정되어도 다음 번에 재신청 가능) 단, 정산신청 가능금액 합계가 지원산업별/기업별 지원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세 지원한도 공고문 등 통해 확인 가능)

Q2. 소재·부품·장비와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과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귀 사의 업종에 따라 공고문의 소재·부품·장비 및 소비재 지원요건을 참고하여 두 사업 중 하나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Q3. 2022년 산업부 하반기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 기간이 동일한 2022년 산업부 하반기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과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협약기간이 종료된 2022년 산업부/중기부 상반기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인증을 취득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인증 획득 소요비용이 지출되었고, 부분완료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에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인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 또는 심사보고서 제출 시, 부분완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분완료된 비용 또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A. 컨설팅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인 인증비(신규, 갱신, 연회비), 법정대리인비(현지책임회사비용)가 있습니다. 연회비는 인증기관의 공식 문서에 연회비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6. 해외규격인증 공고규격에 나와있지 않은 인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금번 해외규격인증 전용 사업의 경우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해외규격인증 및 시스템인증만 지원 가능합니다.
Q7. 해외인증 인증건수 및 획득비용 한도 여부
A1. 인증건수 제한 없음(참여기업 수출바우처 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A2. 동일제품(모델)에 대해 복수인증 정산가능(예: 유럽 CE, 미국 FCC, 호주 RCM 등) A3. 인증서 기준 제3자 인증서(COC), 자기적합선언문(DOC) 모두 정산 가능
Q8. 사후관리, 갱신, 연회비 등 정산 가능 여부
A1. 사후관리, 갱신, 연회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해당 인증 결과물(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A2. 참여기업이 대행기관을 통해 인증을 진행한 경우 : - 컨설팅비용(대행수수료 등) 인정 불가 - 시험비, 심사비, 인증비 정산 가능(한도 기준 적용) A3. 연회비의 경우, 인증 취득 후 유지를 위해 매년 인증기관에서 부과하는 비용으로 인증기관의 인보이스, 송금내역 및 기타 증빙서류(인증유지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9. 인증 결과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결과물은 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등록증) 등이 포함됩니다.
Q10. 인증비용 인정 기준은?
A. **인증 결과물(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의 발행기관과 비용서류(견적서, 인보이스 등)의 발급기관**이 일치해야 함. (주의사항) 참여기업이 의뢰한 시험·인증기관에서 일부 시험, 심사 등을 타 기관에 재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받은 시험/심사기관의 시험성적서/심사보고서 및 해당 기관의 인보이스(청구서), 송금증 필히 제출
Q11. 바우처 사후정산번호란?
A. 바우처 사후정산 번호(E로 시작)는 사후정산 신청 시 생성됨

2 신청 시, 유의사항

1.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하는 인증획득비용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2. 최초 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 모두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요건 결격** 등의 경우 **별도 보완요청 및 사전 공지 없이 자동 미선정 처리**하고, 후보기업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요건 결격 등으로 미선정된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 탈락 처리된 신청 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시) 22.9.6일 1차 접수 후 서류미비로 탈락된 건을 22.9.20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자는 22.9.20일 적용

3. 신청금액(정산신청 가능금액)과 실제 지원금액(바우처 발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총괄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의 증빙서류 검수 결과에 따라 **지원 신청금액과 실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선정 후 절차를 기한 내 진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 정산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진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22.4) 및 2022년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해외규격인증 전용 정산가이드('22.9)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2022.9.14. 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인증에 대해서는 2022.9.14. 이전에 지출한 인증획득비용만 지원 가능

3 신청서류 작성 및 정산 요청 시, 유의사항

1. 해외규격인증 결과물(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및 인증서 등)은 ′22년 2월 1일 이후 발급된 경우만 정산가능합니다.

- 비용지급일자는 정산관련 없으며 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 등 인증결과물이 사업기간內 발행된 경우만 정산가능)

2.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에 참여기업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증서, 성적서, 심사보고서 등에 참여기업 명이 없는 경우 : 지원 불가
- 참여기업이 他社에 위탁생산(A社) 진행 한 경우에도 결과물인 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에 신청자 또는 제조자 정보(참여기업명)에 있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 합니다.

※ **CPNP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제품이 참여기업의 소유 브랜드임을 증명**

3. 법정대리인(현지책임회사) 비용 정산을 위해서는 현지책임회사 확인을 위하여 (참여기업-현지책임회사간)계약서 및 현지책임회사명이 명기된 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지책임회사 비용을 처리해야 할 경우, **유효하게 발행된 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 중 1개 이상에 현지책임회사가 명기** 된 경우, 또는 인증기관의 공식 사이트에 현지책임회사가 명기된 경우와 같이 증빙이 가능한 자료만 인증됨.

☞ 법정대리인(현지책임회사)와 단순 현지 대행기관, 현지에이젼트는 다릅니다. 현지책임회사는 해당 인증의 법령 또는 지침 등에서 명시 요구되며, 인증획득 후 인증서, 성적서 등에 현지책임회사 정보가 대부분 명시 됩니다.

- 현지책임회사 비용은 **신규인증 (또는 갱신 후 신규인증) 발행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현지책임회사비용이 최초인증, 갱신인증시 외에도 연회비 개념으로 매년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불가 합니다.

4. 신청서 및 세부내역서는 제품별, 인증별로 작성,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제품별 인증별로 별도의 세부내역서(엑셀양식)에 각각 따로 기재하여 정산신청** 하셔야 합니다.

예) 동일품에 대해 CE, NRTL, FCC 3개인증을 받은 경우, 3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정산신청.

5. 비용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인보이스(견적서), 세금계산서는 인증결과물(시험성적서, 보고서, 인증서 등)이 발급된 기관에서 직접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해당기관까지 송금한 송금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소재기관으로부터 시험/인증을 진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인증결과물이 발급된 기관에서 발행된 인보이스(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 또한 **해당기관으로까지 최종 송금한 모든 송금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부득이하게 송금액과 인보이스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송금증 제출필요)

☞ 국내 또는 해외대행기관에서 발행된 인보이스(견적서)는 인정되지 않음.

☞ 중국인증(NMPA 등)의 경우, 중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보이스 내에 비용이 정산요청기업의 진행 건에 대한 세부 비용항목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확인이 가능한 별도자료(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위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증빙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한도 내에서 검수기관이 재량적으로 정산여부 최종 결정

6. 중국위생허가(NMPA, 舊CFDA) 진행시 주의사항

- **(사전 성분검토)** 화장품 위생허가 진행과정 중 금지성분이 발견되어 인증진행 도중에 인증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진행 전에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확인하시어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시험비용 정산)** 중국위생허가의 경우 **해당 시험은 중국내 지정 시험기관에서 진행**이 됨. 일부 미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인증 진행하는 경우 **시험기관 성적서에 대한 비용서류 (화표 및 시험기관 신청서)**를 발급 받지 못해 비용정산에 애로가 발생이 되오니 미리 **시험기관의 비용서류 발급되는 곳을 확인 진행** 바랍니다.

7. 유럽 화장품 등록(CPNP) 진행시 주의사항

- **(정산가능 항목)** CPNP 화장품 등록에서 정산가능한 항목은 **현지책임회사(RP) 비용, 외부시험기관 진행 시험비용, (전문가 확인이 포함된) CPSR비용**입니다. **세부내역서** 작성시 **CPSR비용항목은 심사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 정보)** 해외규격인증 결과물에는 원칙적으로 참여기업 정보(참여기업명)가 명시되어야 하나 CPNP 등록증을 포함한 인증결과물에는 제품명, 브랜드명의 정보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PNP등록된 제품이 참여기업(신청기업) 소유브랜드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율판매증명서 또는 상표권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유라시아 CU(EAC) 인증 진행시 주의사항

- **(비용 정산)** 현지 시험인증기관 **A로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A가 참여기업에 통보 없이 타 **시험인증기관 B로 업무를 위탁**하여 최종 결과물이 B에서 발행되는 경우, **B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제출하셔야 시험인증 비용정산**이 진행됩니다. A를 통해 B에서 발행한 비용증빙 서류를 입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최종 인증서 발급주체를 확인하시어 비용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 바랍니다.

- **(지정 시험인증기관 및 지정범위 확인)** EAC(Eurasian Economic Commission) 홈페이지에서 회원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별 **지정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리스트 및 기관별 지정범위 확인(아래 접속안내 참고)**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지정범위를 가진 기관으로 직접 인증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국별 시험인증기관 리스트(러시아어)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docs/Pages/IL_OS.aspx

※ 러시아 소재 인증기관 리스트(총 1452개 인증기관 중 1250개, 2019년 9월 기준)
https://portal.eaeunion.org/sites/odata/_layouts/15/Portal.EEC.Registry.Ui/custom/36/DirectoryForm.aspx?ViewId=77a8759e-4554-4c2e-b878-a2c275a252a7&ListId=0e3ead06-5475-466a-a340-6f69c01b5687&ItemId=221#query=%5B%7B%22c%22%3A%22state%22%2C%22o%22%3A%22Contains%22%2C%22v%22%3A%22%D0%A0%D0%BE%D1%81%D1%81%D0%B8%D0%B9%D1%81%D0%BA%D0%B0%D1%8F%20%D0%A4%D0%B5%D0%B4%D0%B5%D1%80%D0%B0%D1%86%D0%B8%D1%8F%22%7D%5D

※ 러시아 소재 시험기관 리스트(총 3249개 시험기관 중 2285개, 2019년 9월 기준)
https://portal.eaeunion.org/sites/odata/_layouts/15/Portal.EEC.Registry.Ui/custom/36/DirectoryForm.aspx?ViewId=25608659-61ab-4dfc-9687-5d0469ab85c5&ListId=0e3ead06-5475-466a-a340-6f69c01b5687&ItemId=223#query=%5B%7B%22c%22%3A%22state%22%2C%22o%22%3A%22Contains%22%2C%22v%22%3A%22%D0%A0%D0%BE%D1%81%D1%81%D0%B8%D0%B9%D1%81%D0%BA%D0%B0%D1%8F%20%D0%A4%D0%B5%D0%B4%D0%B5%D1%80%D0%B0%D1%86%D0%B8%D1%8F%22%7D%5D

9. 외부기관(대행기관, 시험 및 인증기관) 정산 검수 제한 및 제제사항

제한 사항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 사업 운영지침, 윤리강령,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참여기업, 대행기관, 외부 시험기관 또는 외부 인증기관과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획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여기업에게 환급한 경우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총괄수행기관, 운영 및 관리기관 등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총괄수행기관, 운영 및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정산 검수 거절, 해당 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법률 및 기타 지침 등 에 따른 제제 사유가 됨.

※ 외부기관 : 수출 바우처의 참여기업을 제외한 외부 대행기관, 시험 및 인증기관

3 문의처

문의처

- 수출바우처 사이트 문의(온라인) : 커뮤니티 → 문의하기 → 문의유형*
  *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또는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선택 후 작성
- 전 화 : **사업신청** [신청문의] 1533-4323 [정산문의] 02) 860-1409, 1445, 1485
  시스템 이용 관련(IT 헬프데스크) 02-3460 3427
- 메 일 : voucher@ktl.re.kr, exportvoucher@kotra.or.kr

수출바우처
인증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CERTINFO 검색
해외인증정보시스템
Certification Information Center
https://certinfo.kr